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김동아 · 이주희 · 최혁진  
조인철 · 송옥주 · 허성무  
이광희 · 박민규 · 윤준병  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출산·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,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·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·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15

조약2 신설).

##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공공기관의 출산·육아등 정책 이행 지원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산정,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, 육아, 가족돌봄과 관련한 정책(이하 이 조에서 “출산·육아등 정책”이라 한다)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산·육아등 정책 이행과 관련된 인력 변동 또는 비용에 대하여 총인건비 산정, 효율성·생산성 지표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이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대상, 범위,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15조의2(공공기관의    출산·육아등 정책 이행 지원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산정,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, 육아, 가족돌봄과 관련한 정책(이하 이 조에서 “출산·육아등 정책”이라 한다)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산·육아등 정책 이행과 관련된 인력 변동 또는 비용에 대하여 총인건비 산정, 효율성·생산성 지표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이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</u></p>

용 대상, 범위, 구체적인 기준  
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 
통령령으로 정한다.